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2층 파크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2025.01.01~2025.12.31.) 승인의 건
※ 당사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시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진행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2)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태운 선임의 건 (별첨3)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채이배 선임의 건 (별첨4)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 참석: 신분증
- 대리인 참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원본, 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나. 전자투표에 의한 행사

-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3월 21일(토) 오전 9시 ~ 3월 30일(월)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결권 행사 가능
[본인인증 방법: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2026년 3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무하로 214

 **한미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현 (직인생략)

(별첨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생략)</p> <p>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좌동)</p> <p>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대리권 증명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p>
<p>제33조 (이사의 수)</p> <p>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제33조 (이사의 수)</p> <p>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u>는 이사총수의 <u>3분의1이상</u>으로 한다.</p>	<p>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법 제542조의8) 상향</p>
<p>제36조 (이사의 보선)</p> <p>①(생략)</p> <p>②(생략)</p> <p>③사외이사가 해임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p>	<p>제36조 (이사의 보선)</p> <p>①(좌동)</p> <p>②(좌동)</p> <p>③<u>독립이사</u>가 해임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p>	
<p>제42조의2 (위원회)</p> <p>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p> <p>1.감사위원회</p> <p>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3.ESG위원회</p> <p>4.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②(생략)</p> <p>③(생략)</p>	<p>제42조의2 (위원회)</p> <p>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p> <p>1.감사위원회</p> <p>2.<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p> <p>3.ESG위원회</p> <p>4.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②(좌동)</p> <p>③(좌동)</p>	<p>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4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생략)</p> <p>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⑤(생략)</p> <p>⑥(생략)</p> <p>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⑧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좌동)</p> <p>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p> <p>⑤(좌동)</p> <p>⑥(좌동)</p> <p>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⑧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조의8)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1명→2명) 상향 (상법 제542조의8)</p> <p>감사위원의 선, 해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에 따라 이를 반영(상법 제542조의12 제4항)</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p>부 칙(2026. 3. 31.)</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3조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경과조치) 제33조, 제36조, 제42조의2, 제44조(제3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p>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별첨2) 이사 선임의 건

1) 이사 후보자 (4명): 사내이사 황상연, 사내이사 김나영, 사외이사 한태준, 사외이사 김태윤

황상연 (사내이사)			
생년월일	1970년 7월 25일		
주요약력	2025년~현재 재	HB인베스트먼트(주) PE부문 대표	
	2021년~2022년	(주)브레인자산운용 대표이사	
	2020년~2021년	(주)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	
	2014년~2017년	(주)알리안츠 글로벌인베스터스, CIO	
	2005년~2014년	(주)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1995년~2000년	(주) LG화학 바이오텍연구소	
추천인	이사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나영 (사내이사)			
생년월일	1975년 9월 1일		
주요약력	2022년~현재 재	한미약품(주) 신제품 개발본부장	
	2016년~2021년	한미약품(주) 개발 상무이사	
	2012년~2015년	한미약품(주) 개발팀 팀장	
추천인	이사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한태준 (사외이사)			
생년월일	1960년 4월 16일		
주요약력	2016년~현재 재	건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장	
	2016년~2018년	대한환경위해성, 보건과학회 제5대 회장	
	2013년~2019년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소장	
추천인	이사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태윤 (사외이사)			
생년월일	1961년 4월 14일		
주요약력	2001년~현재 재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2019년~2025년 CJ제일제당(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4년~2016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인	이사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3) 감사위원회 위원 김태윤 선임의 건

김태윤 (사외이사)			
생년월일	1961년 4월 14일		
주요약력	2001년~현재 재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2019년~2025년 CJ제일제당(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4년~2016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인	이사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채이배 선임의 건

채이배 (사외이사)			
생년월일	1975년 1월 2일		
주요약력	2005년~현재 재 이로움재단 상임이사 (기후재정포럼 책임연구위원) 2022년~2023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2016년~2020년 제20대 국회의원 2005년~2016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추천인	이사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